

의안번호	제214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박문희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9년 6월 24일

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문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6월 24일

발 의 자 : 박문희·박우양·임영은·이상식

이상정·하유정·이의영 의원(7인)

1. 제안 이유

- 도내 산업기술 기반조성과 지역산업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은 물론 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(안 제2조)
-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의 현실에 맞게 개정(안 제3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5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전략산업과와 협의완료

7. 입법예고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.

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지역산업”이란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조제4호 및 제5호와 제11조1항에 따라 선정된 ‘지역특화산업’ 및 ‘광역협력권 산업’을 말한다.

제2조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“기술이전 및 사업화”란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.
4. “특화사업”이란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도내 시·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지역기술혁신 거점 육성 및 산업기술단지 조성 관련 사업
2. 지역산업 발전계획 수립

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제5호와, 제6호,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5.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사업
- 6. 기술이전 및 사업화사업
- 8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의한 특화사업 계획의 수립 및 운영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실시된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(생략)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지역전략산업”이란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조제5항과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“기술사업화”란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.</p> <p>4. “지역특화사업”이란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도내 시·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지역산업”이란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조제4호 및 제5호와 제11조1항에 따라 선정된 ‘지역특화산업’ 및 ‘광역협력권산업’을 말한다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기술이전 및 사업화”란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.</p> <p>4. “특화사업”이란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도내 시·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사업) ① <u>충북테크노파크</u> (이하 “<u>테크노파크</u>” 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<u>지역기술혁신 거점 육성사업</u></p> <p>2. <u>지역전략산업 발전계획 수립과 평가</u></p> <p>3. <u>산업기술단지 조성 관련 사업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<u>지역기업지원 사업</u></p> <p>6. <u>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</u></p> <p>7. (생략)</p> <p>8. <u>지역특화사업 운영</u></p> <p>9. ~ 10. (생략)</p>	<p>제3조(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지역기술혁신 거점 육성 및 산업기술단지 조성 관련 사업</u></p> <p>2. <u>지역산업 발전계획 수립</u></p> <p>3. (삭제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사업</u></p> <p>6. <u>기술이전 및 사업화사업</u>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의한 특화사업 계획의 수립 및 운영</u></p> <p>9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 법령

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. “지역특화산업“이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시·도의 산업으로서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.
5. “광역협력권산업“이란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광역협력권의 산업으로서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.

제11조(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 ① 시·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관할 구역의 시·군·구의 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·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광역협력권의 광역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. 7., 2018. 3. 20.>

1.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
2.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
3.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

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기술이전“이란 양도, 실시권 허락, 기술지도, 공동연구, 합작투

자 또는 인수·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(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)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.

3. “사업화“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·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.

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7. “특화사업“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